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44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A
	2. B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경 전 명칭: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구합5198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4.
판 결 선 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들에게 한 토지분 취득세 228,992,540원, 교육세 21,456,050원, 농어촌특별세 11,449,620원(각 가산세 포함) 및 건물분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세 108,219, 040원, 교육세 5,794,190원, 농어촌특별세 6,755,5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각주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직접 사용'은 소유 주체로서 직접 사용, 즉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제1심판결서 9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 제1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추징조항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입법취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조항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형식적인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물출자 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현물출자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50%씩 보유하여, 현물출자 전후에 실질적인 보유관계의 변동이 없고, 원고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한 추징의 경우에도 제1문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 운영의 편이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내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 **제1심판결서 12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현물출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당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던 것과 별개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